

위원회 개폐 및 운영 규정

개정 2019.03.19., 개정 2019.05.22., 개정 2022.03.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전문지식 수렴, 기구의 합리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설치·운영의 적정성과 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교육관계법령이나 헌장, 정관,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인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이 규정은 제①항 이외에 필요한 임의적 성격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설치절차)

- ①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1호]서식에 작성하여 기획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3.31., 2019.03.19., 2022.03.04.>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획처장은 위원회의 설치여부를 심사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03.19.>

제3조의 2(위원의 자격) <본조신설 2019.03.19.>

각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1. 연수·과건·휴직 등 신분변동으로 3개월 이상 정상근무가 불가능한 자
2. 3년 이내 견책 이상의 징계사실이 있는 자
3. 회의불참 등 위원회 활동이 불성실한 자

제4조 <삭제 2019.03.19.>

제5조 <삭제 2019.03.19.>

제6조 <삭제 2019.03.19.>

제7조 <삭제 2019.03.19.>

제8조 (소집과 의결)

- ①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총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9.03.19.>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05.22.>

제9조 <삭제 2019.03.19.>

제10조 (회의록)

각종 위원회는 매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03.19.>

제11조 (설치)

-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기능
 3. 구성
 4. 임기
 - 가. 해당 위원회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위원이 께워 된 경우 그 보께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 등의 직무
 6. 회의
 7. 소위원회
 8. 간사
 9. 회의록의 작성
 10. 경비 등 지원
 11. 운영세칙
- ② ①항 각 호의 사항은 [별표 2]를 준용할 수 있다.
- ③ 본교 교직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5개 이내의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3.19.>

제12조 (보고 및 시행)

- ①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각종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제13조 (위원회 해체)

- ① 총장은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체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해체를 위해서는 기획처장에 의한 심사와 교무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개정 2019.03.19., 2022.03.04.>

③ 기한을 정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활동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기한 도래 시 해산의결로 간주하고 심의의결 없이 해산한다.<신설 2019.03.19.>

제14조 <삭제 2019.03.1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정 2022.03.04.>

위원회 개·폐 신청서

소관부서		<input type="checkbox"/> 개설 <input type="checkbox"/> 폐지
위원회 명칭		
개·폐사유		

위와 같이 위원회의 개·폐를 신청합니다.

기획처장 귀하

[별표 2]

[위원회 운영규정 예시]

○ ○ ○ ○ ○ ○ 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19.00.0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능)

○○○○○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 주요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 관련 중요사항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는 교육과 연구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교내·외 위원 ○○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교내위원은 ○○○처장, ○○○처장, ○○○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외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인사 등으로 한다.
- 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한다.

제4조 (임기)

- 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 (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명을 두며, ○○○○으로 한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 등 지원)

-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0000.00.0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